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

## 교육부

수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 
(경유)

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제45조 관련) 해석결과 안내

---

### 1. 관련

- 가. 전남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-15855(2018.11.9.) 「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」
- 나. 학교안전총괄과-1791(2019.3.22.) 「법령해석 요청」
- 다.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1787(2019.5.7.) 「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」

### 2. 「학교안전법」 제45조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, 시·도교육청 및 시·도공제회에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질의 내용 : 「학교안전법」 제45조(다른 보상·배상과의 관계) 관련
- 나. 질의 기관 : 전남교육청, 교육부(학교안전총괄과)
- 다. 법령해석 내용 : 붙임 참조

※ (법제처)2019년 제1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

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(학교안전법 제45조 관련) 1부, 끝.

교 육 부 장 관



주무관 김별라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박치면 학교안전총괄 2019.5.9. 과장 유정기

협조자

시행 학교안전총괄과-2854 (2019. 5. 9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(어진동, 교육부) / [www.moe.go.kr](http://www.moe.go.kr)

전화번호 044-203-6263 팩스번호 044-203-6971 / [starla@korea.kr](mailto:starla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질의제목 : 전라남도교육청 및 교육부 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2항에 따른 “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”의 범위(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등 관련)

관련문서 :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생활안전과 - 15855(2018. 11. 12.)  
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- 1791(2019. 3. 25.)

### 1. 질의요지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(이하 “수급권자”라 함)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“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함)는 그 지급받은 범위만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?

### 2. 회답

이 사안의 경우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### 3. 이유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학교안전법”이라

함) 제45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<sup>1)</sup>를 예방하고,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·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,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(이하 “피공제자”라 함)가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릅니다.<sup>2)</sup>

그리고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(제18조제1항제2호), 공제회는 교육감이 설립하고(제15조제1항) 학교장이 그 가입자가 되며(제12조) 공제회의 재정은 교육감이 설치한 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”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(제24조)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제급여는 피공제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계약상의 대가나 반대급부로 볼 수 없습니다.

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”는 다른 법령에서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

1) 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“학교안전사고”를 말하며, 이하 같음.

2) 헌법재판소 2015. 7. 30. 선고 2014헌가7 결정례 및 대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6다208389 판결례 참조

당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.<sup>3)</sup>

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“다른 법령”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---

3) 서울고등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3나647 판결례 참조